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소 :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외국인주민센터,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5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 ① 시장 직속으로 미래전략관을 둔다.

②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관, 감사관을 둔다.

③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전략관은 정책연구 및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2. 공보관은 시정 홍보 및 고시·공고에 관한 사항
3. 감사관은 공무원의 윤리·감사 및 국민 권익 관련 업무

제6조 중 "행정국"을 "안전행정문화국"으로, "주민복지국"을 "시민복지국"으로, "안전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안전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① 안전행정문화국에 총무과, 안전사회지원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민원여권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안전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공무원 인사 및 조직·교육, 후생복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총괄, 재난관리, 복구지원, 안전점검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3. 자치행정, 선거 및 투표, 국제협력,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출,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종교, 예술, 문화시설 등에 관한 사항
6. 민원, 여권,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정보보호, 통신에 관한 사항

행정국 총무과 한복수 2014-11-18 17:19

제8조 제1항 중 "정책기획과"를 "기획법무과"로 하고,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유치, 투자유치, 투자사업, 마이스산업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의 제목 중 "주민복지국"을 "시민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복지국"을 "시민복지국"으로, "보육정책과·일자리정책과"를 "보육정책과·체육진흥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중 "안전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주택국에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및 도시디자인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공영개발 및 시설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관리에 관한 사항
4. 주택사업, 주택관리, 주거정비에 관한 사항
5. 건설, 도로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정보, 도로명주소, 공간정보 및 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
7. 도시정책 및 위원회 운영, 도시경관 및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1항 중 "시민공원과"를 "공원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외국인주민센터,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둔다.

제19조 중 "소장 또는 관장"을 "원장, 소장"으로 한다.

행정국 총무과 한복수 2014-11-18 1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사업소의 조직 및 소관사무) 사업소의 조직과 사업소의 장이 맡아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해양관광본부에는 대부개발과, 관광과, 해양수산과를 두며, 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대부도 일원의 정책·도시개발·산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나. 관광정책, 개발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다. 해양개발 및 수산업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지원본부에는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공단환경과를 두며, 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산업정책 및 기업지원 등 산업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안산사이언스밸리·연구기관 관리 등 과학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다. 국제 통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외국자본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일자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바. 기업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사. 건축민원 등 스마트허브 관련 인·허가 및 각종 민원사항에 관한 사항
   아.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자. 스마트허브 내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산업단지내 환경관리 및 지도·단속,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카. 악취측정상황실 운영 및 측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산업정책 및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원에는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여성비전센터를 두며, 평생학습원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평생학습, 학교 교육 지원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정책 및 중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감골도서관 및 소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관산도서관 및 소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를 두며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상수도시설 확충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수도요금, 시설분담금, 정액요금, 제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국 총무과 한복수 2014-11-19 10:23

라. 수도시설, 급수 및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
마. 정수시설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바. 하수시설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외국인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거주외국인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다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 인권에 관한 사항

6. U-정보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U-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공공시설물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에 관한 사항
라.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책임보험·저당권에 관한 사항
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라.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관련 취득세, 등록세 업무에 관한 사항

8.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다.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②「안산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문화국장"으로, 본부장을 "본부장·

행정국 총무과 한복수 2014-11-18 17:19

원장” 으로 하고, 제7조 제3항 중 “행정국장” 을 “안전행정문화국장” 으로 한다.

③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업무담당국장” 을 “업무담당본부장” 으로 한다.

④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업무담당국장” 을 “업무담당본부장” 으로 한다.

⑤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업무담당국장” 을 “업무담당원장” 으로 한다.

⑥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담당국장” 을 “담당원장” 으로 한다.

⑦ 「안산시 화정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업무담당국장” 을 “업무담당원장” 으로 한다.

⑧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건축과장” 을 “주택과장” 으로 한다.

⑨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산시여성비전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 을 “안산시여성비전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 제6조 제2항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호 중 “소장” 을 각각 “센터장” 으로 한다.

⑩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호, 제8조, 제12조 제2항 중 “소장” 을 각각 “센터장” 으로 한다.

⑪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업무담당본부장” 을 “업무담당국장” 으로 한다.

⑫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업무담당본부장” 을 “업무담당국장” 으로 한다.

⑬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업무담당본부장” 을 각각 “업무담당국장” 으로 한다.

⑭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재업무담당본부장” 을 “문화재업무담당국장” 으로 한다.

⑮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국 총무과 한복수 2014-11-18 17:19

제10조제1항제1호 중 “업무담당본부장” 을 “업무담당국장” 으로 한다.

⑯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업무담당본부장” 을 “업무담당국장” 으로 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실·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박 미 라
안	계장·팀장 직위·성명	조직교육계장 이 범 열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한 복 수 (행정 3108)

행정국 총무과 한복수 2014-11-18 17:19

〈별 지〉

【별표 1】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안산시청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사동)
안산시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사동)
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부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31(대부북동)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원시동)
안산시 평생학습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원곡동)
안산시 U-정보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00 (사동)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선부동)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 (이동)

행정국 총무과 한복수 2014-11-18 17:19

신·구조문대비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생 략〉 1. 〈생 략〉 2. 사업소 :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외국인주민센터,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여성비전센터 3. 〈생 략〉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사업소 :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외국인주민센터,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3. 〈현행과 같음〉
제5조(부시장) ①~② 〈생 략〉 ③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관·감사관을 둔다.	제5조(부시장)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5조의2(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 ① 시장 직속으로 미래전략관을 둔다. ②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관, 감사관을 둔다. ③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전략관은 정책연구 및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2. 공보관은 시정 홍보 및 고시·공고에 관한 사항 3. 감사관은 공무원의 윤리·감사 및 국민권익 관련 업무
제6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기획경제국·주민복지국·안전도시국 및 환경교통국을 둔다.	제6조(국의 설치) ---------- ------안전행정문화국 ------시민복지국·도시주택국----------
제7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제7조(안전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① 안전행정문화국에 총무과, 안전사회지원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민원여권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행정국 총무과 한복수 2014-11-18 17:20

현 행	개 정 안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공무원 인사 및 조직·교육, 후생복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2. 자치행정, 선거 및 투표, 국제협력,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출,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 학교 교육 지원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원, 여권,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정보보호, 통신에 관한 사항	② 안전행정문화국장---------- 1. ---------- 2. 안전총괄, 재난관리, 복구지원, 안전점검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3. ---------- 4. ---------- 5. 문화·종교, 예술, 문화시설 등에 관한 사항 6. ---------- 7. ----------
제8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① 기획경제국에 정책기획과, 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및 녹색에너지과를 둔다. ② 〈생 략〉 1~3. 〈생 략〉 4.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5~7. 〈생 략〉	제8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① ----------기획법무과---------- ----------,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기업유치, 투자유치, 투자사업, 마이스산업 등에 관한 사항 5~7.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주민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보육정책과·일자리정책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생 략〉 6. 일자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생 략〉	제9조(시민복지국----) ① 시민복지국---------- ----------보육정책과·체육진흥과 ---------- ② 시민복지국장---------- 1~5. 〈현행과 같음〉 6.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7. 〈현행과 같음〉

행정국 총무과 한복수 2014-11-18 17:20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는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공영개발 및 시설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건축 및 주택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신 설〉 4. 건설, 도로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총괄, 안전문화, 안전재난관리 및 민방위·비상대비·안전상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토지정보, 도로명주소, 지리정보 및 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 7. 도시정책 및 위원회 운영, 도시경관 및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및 도시디자인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관리에 관한 사항 4. 주택사업, 주택관리, 주거정비에 관한 사항 5. 건설, 도로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6. ----------공간정보---------- 7. 〈현행과 같음〉
제11조(환경교통국에 두는 과) ① 환경교통국에는 환경정책과·청소행정과·녹지과·시민공원과·교통정책과 및 대중교통과를 둔다. ② 〈생 략〉 1~6. 〈생 략〉	제11조(환경교통국에 두는 과) ① ----------공원과---------- ②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제18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문화체육관광본부·산업지원본부·상하수도사업소·외국인주민센터·중앙도서관·감골도서관·관산도서관·U-정보센터·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여성비전센터를 둔다.	제18조(설치) ----------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외국인주민센터,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둔다.

행정국 총무과 한복수 2014-11-18 17:20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각각 본부장·소장 또는 관장을 두며, 사업소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사업소의 장) ---------- -----원장, 소장 ---------- ---------- ----------
제20조(사업소의 조직 및 소관사무) 〈생략〉 1. 문화체육관광본부에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해양수산과를 두며 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문화·종교, 예술, 문화시설 등에 관한 사항 나.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다. 관광정책, 개발 마케팅에 관한 사항 라. 해양개발 및 수산업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지원본부에는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공단환경과를 두며 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라. 〈생 략〉 〈신 설〉 마~카.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생 략〉	제20조(사업소의 조직 및 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대부해양관광본부에는 대부개발과, 관광과, 해양수산과를 두며, ----- ---------- 가. 대부도 일원의 정책·도시개발·산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나. 관광정책, 개발, 마케팅에 관한 사항 다. 해양개발 및 수산업 등에 관한 사항 2. ----------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 ----------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일자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바~타. 〈현행 마~카와 같음〉 3. 평생학습원에는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여성비전센터를 두며, 평생학습원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가. 평생학습, 학교 교육 지원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정책 및 중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감골도서관 및 소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관산도서관 및 소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행정국 총무과 한복수 2014-11-19 10:22

현 행	개 정 안
가~바. <생 략>	가~바. <현행과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가.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주민센터 ---------- ---
나~라. <생 략>	나~라. <현행과 같음>
5. 중앙도서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삭 제>
가. 도서관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나. 중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6. 감골도서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삭 제>
가. 감골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나. 성포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다. 상록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7. 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삭 제>
가. 관산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나. 단원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8. <생 략>	6. <현행 제8호와 같음>
가~라. <생 략>	가~라. <현행과 같음>
9. <생 략>	7. <현행 제9호와 같음>
가~라. <생 략>	가~라. <현행과 같음>
10. <생 략>	8. <현행 제10호와 같음>
가~다. <생 략>	가~다. <현행과 같음>
11. 여성비전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삭 제>
가.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나. 여성비전센터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별표 1】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기관명	소재지
안산시청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사동)
안산시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별표 1】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기관명	소재지
안산시청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사동)
안산시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행정국 총무과 한복수 2014-11-18 17:20

현 행		개 정 안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사동)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사동)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본부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대부해양관광 본부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31 (대부북동)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원시동)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원시동)
<신 설>	<신 설>	안산시 평생학습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
안산시 상하수도사업 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	안산시 상하수도사업 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
안산시 외국인주민센 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원곡동)	안산시 외국인주민센 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원곡동)
안산시 중앙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4 (고잔동)	<삭 제>	<삭 제>
안산시 감골도서관	안산시 상록구 감골공원안길 16-1 (사동)	<삭 제>	<삭 제>
안산시 관산도서관	안산시 단원구 관산길 29 (원곡동)	<삭 제>	<삭 제>
안산시 U-정보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00 (사동)	안산시 U-정보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00 (사동)
안산시 차량등록사업 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선부동)	안산시 차량등록사업 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선부동)
안산시 농수산물도매 시장관리사무 소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 (이동)	안산시 농수산물도매 시장관리사무 소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 (이동)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 (고잔동)	<삭 제>	<삭 제>

행정국 총무과 한복수 2014-11-18 17:20